

재외선거제도

○ 선거권자

▶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뉩니다.

▶ 재외선거인

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

▶ 국외부재자신고인

국외여행자, 유학생, 상사원,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

▶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.

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집니다.

▶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



▶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란?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'국내거소신고인명부'에 올라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.

목록

▲ 이전글	도입과정 및 의의
▼ 다음글	대상선거

▶ 담당부서 : 재외선거과 ☎ 문의 : 02-504-5354

※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콘텐츠 만족도 ○★★★★ 만족 ○★★★ 대체로만족 ○★ 보통 ○ 불만족 **평가**

🔍 가장 많이 본 정보 >

전체 분야별정보 통합자료

-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...
-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...
- 3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...
-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...
- 5 역대 임기만료 및 재보궐선거...
- 6 신형 기표대
- 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...
- 8 오징어 다리는 몇 개?
- 9 2015하반기 재보궐선거 사...
- 10 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...

선거일정

- ▶ 목록으로 보기
- ▶ 달력으로 보기



선거통계시스템

- ▶ 역대선거 개표결과
- ▶ 역대선거 후보자 각종통계

